

#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8. 29.

발의자 : 안규백 · 김해영 · 문희상  
이찬열 · 이춘석 · 윤호중  
이동섭 · 김경협 · 김정우  
이용득 · 전혜숙 · 김진표  
고용진 · 윤관석 의원  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(정의)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·임시시장·상점가·전문상가단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4호).

법률 제 호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제2조제3호·제4호·제6호·제7호”를 “제2조제3호·제5호·제7호·제8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 범위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, 개방화장실, 이동화장실,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(이하 “공중화장실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	제3조(적용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제2조 제3호·제4호·제6호·제7호</u> 에 따른 대규모점포·임시시장·상점가·전문상가단지 5. ~ 17.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<u>제2조 제3호·제4호·제6호·제7호</u> 에 따른 대규모점포·임시시장·상점가·전문상가단지	4. ----- <u>제2조 제3호·제5호·제7호·제8호</u> ----- ----- -----
5. ~ 17. (생 략)	5. ~ 17. (현행과 같음)